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17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5. 24.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18,250원, 지방교육세 335,940원, 농어촌특별세 241,030원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 1,828,050원, 지방교육세 145,420원, 농어촌특별세 104,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2. [redacted]도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930번지를 주된 사무소로 하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7. 29. 및 2011. 9. 28. [redacted]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567-1 대 992㎡ 및 그 지상건물 19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2016. 6. 2.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봉사자의 숙소로 사용하여 종교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4,218,250원, 지방교육세 335,940원, 농어촌특별세 241,030원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1,828,050원, 지방교육세 145,420원, 농어촌특별세 104,440원을 각 부과 · 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개신교 종교단체들의 전통적 예배의 범위를 확장하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한 영성훈련을 강조하고자 수도원과 유사한 공동생활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숙박 장소로 이용되었는바, 이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목적과 운영 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갑 제8, 10,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영성훈련 참가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종교행위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는 거실과 주방 및 침실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실과 각 방에는 침대 2개와 책장으로 보이는 가구 등이 있을 뿐 특별히 예배를 위한 시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② 원고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 또는 봉사자들이 원고의 종교행위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참가자 등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1)]

③ 원고가 제작한 안내책자에 의하면, 원고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산책과 독서 등의 일과 외에 묵상, 공동식사, 찬양과 기도회 또는 강의, 취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프로그램 중 취침에만 사용될 뿐 특별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프로그램의 필요불가결한 내용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설립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종교행위를 위한 공동체 생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더라도 '취침' 자체가 예배 등 종교행위가 될 수는 없으므로, 공동체 생활을 이유로

1)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현재는 담임목사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으로 '봉사자 숙소 및 예배 처소'라고 기재한 원고의 2016. 5. 23.자 감면자료(을 제1호증) 및 보일러 고장 후부터 담임목사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담임목사의 주거로 사용된 시기는 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로 판단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